

# 내부신고자 보상-보호체계 일원화등 발전방안 연구

강문수





# 내부신고자 보상-보호체계 일원화등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Ways to Develop  
the Internal Public Interest Reporter Protection and  
Compensation System, including Its Unification

연구책임자 : 강문수(선임연구위원)  
Kang, Mun-Soo

2018. 9. 28.



## 연 구 진

연구책임	강문수	선임연구위원
심의위원	장교식	건국대학교 교수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 부패·공익 신고관련 법률 간 체계성 미흡에 따른 제도 효율성 미흡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반부패·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을 각각 제정·운영 중에 있으나,
-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이 법령별로 각각 분리 규정되어 있어, 제도별 특성 및 입법시차 등으로 인해 보호·보상 수준 상이
- 이는 제도 운용 목적인 사회질서유지에 있어 관계인 등의 폭넓은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계인 간 신뢰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도운용상 비효율적 문제 발생
  - 부패신고자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수준에로의 강화를 요청하는 민원 증가
  - 신고자 보상·포상의 경우에도 보상 대상, 지급기준 및 한도액 등이 달라 신고자 간 형평성 제기에 따른 통일적 기준 마련에 관한 필요성 증대
  - 이는 곧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신고자 만족도를 향상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일원화 방안 모색으로 귀결

## II. 주요 내용

###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 방안 모색

- 위에서의와 같은 보호·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적 대응방안으로써 고려되어 지는 관련 법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설정
  - 현행 관련법제 가운데 청탁금지법의 경우, 보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상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준용
- 이때 제도 일원화를 위한 방안모색에 있어 관련 법률 간, 입법목적의 상이성,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의 법리적 이질성, 신고의 성격차이 그리고 입법체계 방식의 상이성에 대한 고려에 근거, 입법체계 정비 안 제시 전개
- 이를 위하여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설정을 위한 연구 방법론적 방향을, 제2장에서는 현행 제도운영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하여 제도정비를 위한 현황 요인을 중심으로 언급. 또한 제3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관련 주요국가의 경우를 살펴 시사점을 도출하고,
- 최종적으로 제4장에서는 제도일원화의 법제적 관점 하에서의 필요성 제시와 관련 법률 간 주요내용 비교 및 일원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 제시
  - 즉, 해당 관련 개별 법률 간 입법목적 상이성은 인정하되, 현행 법제적 구분에 따른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의 상이성에 따른 양자 간 작위적 범위설정은 곤란, 다만 신고 행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질서유지 목적은 동일한 바,
  - 이를 달리 규정할 실익은 적고 오히려 향후 전개될 신고대상 행위의 확대화 경향에 맞추어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준거 법률의 입안이 시급히 요청

##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부패·공익 신고관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안을 제시-검토

입법 정비안	입법양태
제1안	별도 기본법 형태의 법률 제정
제2안	현행 법제 유지, 보호·보상 관련 개별 법률 제정
제3안	현행법제 유지 하에 통합(포섭) 법체계 구성 ( <u>신고자 보호·보상체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lt; 공익신고자보호법&gt;</u> )

- 상기 열기된 정비안 가운데, 정비안 별 장단점 분석에 따라 제3안, 현행법제 유지 하에 신고자 보호보상체계에 있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의 통합내지 포섭되는 법제구성이 가장 바람직함을 제시

## Ⅲ. 기대효과

- 이와 같은 연구전개과정은 연구기간 내 3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 (법제처, 국회입법조사처, 유관연구기관, 학계 교수)등의 논의와 검토를 거친 바 있으며, 연구성과물은 향후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일반국민은 물론 공직자 등의 활발한 제도 참여를 위한 법제적 초석을 마련함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

- ▶ 주제어 : 부패신고, 공익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보호-보상



## Abstract

### I. Backgrounds and Purposes

- ▶ System inefficiency due to lack of organization between anti-corruption laws and whistle blowing laws
  - In order to realize an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society,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is enacting and implement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and the “Anti-graft Act.”
  - However, the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and compensation for the reporters are separately stipulated in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th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levels vary due to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difference in timing of legislation.
  - This not only acts as a factor that hinders the broad participation of the persons involved in the maintenance of the social order, which is the purpose of the system, but also negatively affects the formation of trust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the persons concerned, thereby causing inefficiency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 Complaints are increasing to call for raising the level of protection of corruption reporters to the level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 When it comes to compensation and rewards for reporters, those to be compensated, the payment standard and the limit amount are different, increasing the need for the unified standard with the issue of fairness among reporters to be raised.
- This results in seeking ways to unify the reports of corruption and for the public interests and the reporter protection and compensation system in order to promote reports by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reporters can report corruption without fear and raising reporters' satisfaction through reasonable compensation.

## II. Major Content

### ▶ Seeking ways to unify the reporter protection and compensation system

- The related laws, which are considered as legal measures to unify th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system, are set a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 In case of the current Anti-graft Law, the protection is based on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he rewards are based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 At this time, in the search for measures to unify the system, the plan to revise the legislative system is proposed based on the difference in legislative purposes between related laws, legal differences of corrupt acts and public interest infringement, the difference in the nature of reports and the differences in ways to legislate.

- For this purpose, Chapter 1 explores the research methodological direction for the research necessity and purpose setting; Chapter 2 discuss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ystem operation and related problems and focuses on current factors for revise the system; and Chapter 3 looks at cases of major relat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to draw implications; and
- Finally, Chapter 4 presents the necessity of the system unification from the legal perspective, compares the main contents of related laws and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the system unification.
  -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difference in the legislative purposes between relevant laws, but it is difficult to arbitrarily establish the scope of the two laws based on the difference of corrupt acts and public interest infringement acts according to the current legal division. However, the purpose of maintaining social order that reporting acts (binding obligation, induced obligation resulting from heightened citizenship) ultimately pursue.
  - Therefore, stipulating this otherwise does not have much practical benefits and it is urgently required to formulate the applicable law on the reporter protection and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future tendency of expanding the scope of acts to be reported,

▶ Measures to improve the legislation for the unification of the reporter protection and compensation system

- As a measure for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unifying th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system related to reporting of corruption and for public interest, this study presents and reviews the following three proposals.

Proposal	Type of legislation
1 <sup>st</sup> proposal	Establishment of a separate basic law
2 <sup>nd</sup> proposal	Maintaining the current legal system – protection and compensation Enactment of a related individual law
3 <sup>rd</sup> proposal	Form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by integrating (including) and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the current laws <u>(Reporter protection and compensation system: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lt; laws with public confidence)</u>

- Based on the analysis of pros and cons of each proposal abovementione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3rd proposal, which integrates or include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nto the law with public confidence, is most desirable.

### III. Expected Effects

-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has been discussed and reviewed by the related experts (experts at the Office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nd relevant research institutes, and academic professors) through three consultation sessions during the research period. The research resul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for laying a legislative foundation for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as well as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maintain social order.
  
- ▶ **Key Words** : Corruption reports, reports for public interests,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reporter protection and compensation



# 목차

내부신고자 보상-보호체계 일원화등 발전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	5
Abstract .....	9

##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
I. 연구의 범위 .....	21
II.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	22

## 제2장 현행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관련 법제 및 운영 현황 / 25

제1절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	27
I. 신고의 대상행위로서의 부패행위 및 신고절차 등 .....	27
II. 신고자 보호 .....	30
III. 신고자 보상-포상 .....	33
IV. 운영현황 .....	34
제2절 공신법상 공익침해행위 .....	36
I. 신고의 대상행위 및 절차 등 .....	36
II. 신고자 보호 .....	38
III. 신고자 보상, 포상 등 .....	40
IV. 운영현황 .....	42
제3절 문제점 .....	45
I. 운영상 실효적이지 못한 신고자 보호 .....	45
II. 관련 법률 간 체계성 미흡에 따른 신고자 비친화적 법제 운영 우려 .....	46

# 목차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체계 일원화등 발전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3장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 방안 / 69

- 제1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체계 일원화 의미와 전개방향 ..... 71
  - I.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체계 일원화 의미 ..... 71
  - II. 전개방향 ..... 71
- 제2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체계 일원화 방안 전개 ..... 72
  - I. 입법형식의 선택 ..... 72
  - II. 일원화 전개시 주요 고려사항 ..... 74
  - III.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단계적) 일원화 방안 ..... 77
- 참고문헌 ..... 79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부패신고 내지 공익의무위반 신고업무의 주관부처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공신법’이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각각 제정·운영 중에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입법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동법 제1조)”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신법의 경우,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동법 제1조)”을 그리고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동법 제1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규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법 문장 상의 부패행위, 공익침해 행위, 부정한 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와 같이 제재하고자 의도하는 대상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각 개별 법률 등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반부패·청렴사회 실현 및 사회질서 유지를 통한 국민의 실질적 권익보장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공통의 궁극적 목적을 지향하는 개별 법률 간의 관계에 있어 무엇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보다 관련 법률 등에 있어 주요한 지위를 가지는 신고자의 입장에 있어 비 친화적이라는 문제의식이라 할 것이다.

즉 국민의 입장에 있어 반 사회질서행위 내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익상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협조라는 동일한 행위인 신고관련 내용에 대하여 관련 개별 법률에서는 각각 분리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의 입장에 있어 본인이 행한 신고행위가 과연 어느 법률에 해당되어 관련 절차 등이 진행되는 지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특히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에 있어 특히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신법 간 제도별 특성 및 입법시차 등으로 인해 그 보호·보상 수준이 경우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는 제도 운용 목적인 사회질서유지 등에 있어 관계인 등의 폭넓은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주관 국가행정 업무와 관계인 간 신뢰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는 제도운용상 비효율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부패신고자의 경우 공신법상의 공익신고자 보호수준에로의 강화를 요청하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고자 보상·포상의 경우에도 보상 대상, 지급기준 및 한도액 등이 양 법률 간의 규정내용이 상이하여 신고자 간 형평성 제기에 따른 통일적 기준 마련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각건대 이는 곧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신고자 만족도를 향상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범의 조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신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법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신고자의 입장에 있어 자신의 신고행위에 따른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일 법체계를 목적으로 하는 법제정비 방안 모색으로 귀결되어진다 할 것이다. 이때 청탁금지법의 경우, 보호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보상의 경우에는 공신법을 준용하

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바, 본 연구의 주요대상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신법으로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종래의 문헌연구중심 연구방법론에서 탈피, 연구기간 내 3차례에 걸친 전문가자문회의에서 논해진 의견 등을 반영, 진행하여 보고자 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따른 법제정비 방안으로써 먼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신법상의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후 양자 간의 일원화를 위한 법 논리적 전개를 통하여 법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I. 연구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제도 실행이후(부패방지법:2001년, 공익신고자보호법:2011년) 현재 까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제도 운영 현황을 수집-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비 방안 제시
- 관련 주요국가의 경우 관련 법제의 제정이후 최근 법제도 운영현황을 수집-검토

#### (2) 공간적 범위

- 우리나라는 물론, 관련 주요국가의 경우 그 대상을 미국, 영국, 일본으로 설정하여 비교분석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

### (3)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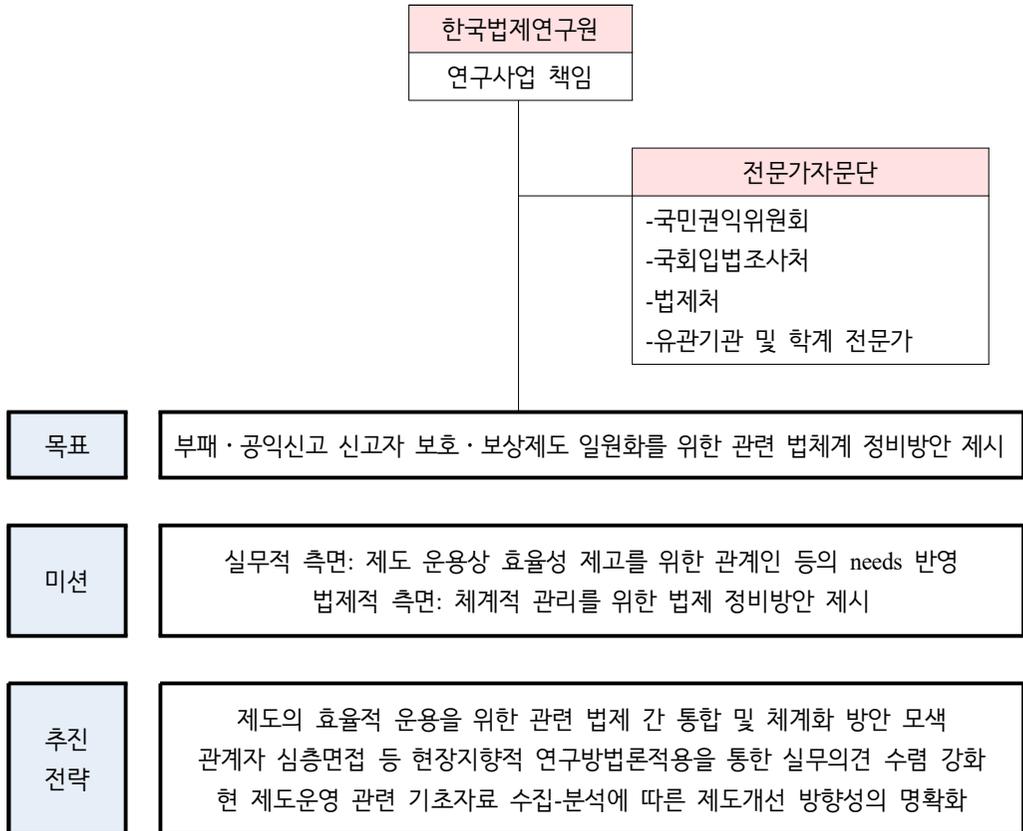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상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현황 및 법제분석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유사제도 운영 현황 및 법제 분석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 솔루션 제시

## II.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 (1) 연구방법론 적용

<b>문헌연구</b>
국·내외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연구성과물 및 관련 법제 문헌 수집·조사·분석
<b>비교방법론적 연구방법론 적용</b>
미국, 영국, 일본 등 관련 내용에 관한 선진적 법제를 보유한 주요국가에 대한 관련 문헌 수집 및 전문가 의견수렴
<b>입법정책적 연구방법론 적용</b>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에 관한 보호-보상체계의 일원화에 목적을 둔 입법정책적 연구 수행
<b>현장지향적 연구방법론 적용</b>
법제도와 더불어 관련 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조사-검토 연구를 위해 실무담당자는 물론, 입법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전문가 활용을 통한 현장 지향적 연구 서

## (2) 연구의 목표- 추진체계



※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책임연구기관 및 연구사업 책임자 및 관계자, 관련 실무 전문가로 구성되며, 연구기간 내 상시적 정기회(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중요 논의 사항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토록 함.

## (3) 전문가자문단 운영

일시/ 장소	주제 및 참석자	주요내용
5. 10 16:00~18:00 프리미엄라운지 (서울역 지하소재)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방향성 설정 및 연구주요내용 검토-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수 (서강대 법전원, 교수), 김태원 (법제처, 법제관), 박영원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관련 법제상 주요내용 분석방향 설정</li> <li>- 현행 관련법제 운용상 발행하는 주요</li> </ul>

일시/ 장소	주제 및 참석자	주요내용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문주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양은영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원), 오주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변호사),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종영 (중앙대 법전원, 교수), 이진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채우석 (송실대 법전원, 교수)	<p>민원사항 정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연구방향에 있어 일원화 체계마련의 필요성 공유</li> </ul>
<p>6. 22 16:00~18:00 프리미엄라운지 (서울역 지하소재)</p>	<p>(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주요내용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p> <p>길준규 (아주대, 교수), 김광수 (서강대 법전원, 교수) 이상수 (법제처, 법제관),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문주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양은영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원), 오주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변호사),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진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채우석 (송실대 법전원,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국가의 관련 제도 운영현황 파악</li> <li>- 일원화 체계 마련 시 요청되는 관련 법제간 보호-보상제도 규정 검토 및 신고자 중심의 일원화체계 확보방안 논의</li> </ul>
<p>9. 7 16:00~18:00 프리미엄라운지 (서울역 지하소재)</p>	<p>(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주요내용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p> <p>길준규 (아주대, 교수), 김광수 (서강대 법전원, 교수)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 박종일(법제처, 법제관),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혁구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장), 양도훈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장), 양은영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원), 오주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변호사), 정은혜 (국민권익위원회, 주무관), 최철호 (청주대,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된 일원화체계 관련 주요내용 및 법체계 심사</li> <li>- 일원화체계 마련 시 고려되는 법제적-실무적 관점에서의 전망과 개선방안 논의</li> <li>- 향후 연구보고서 주요내용 홍보 및 활용방안 논의</li> </ul>

## 제2장 현행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관련 법제 및 운영 현황

제1절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제2절 공신법상 공익침해행위

제3절 문제점



## 제2장

# 현행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관련 법제 및 운영현황

## 제1절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 I. 신고의 대상행위로서의 부패행위 및 신고절차 등

#### (1) 부패행위

부패행위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 유형으로써 공직자의 직무관련성과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해위의 요건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

## 【부패행위 유형비교】

구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요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충설명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말함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예: 주택·상가의 임차관련 분쟁,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 3.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4.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반사적 이익은 제외 5.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모의 등이 있어야 함	1.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함 2.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3.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
혐의 대상자	해당 공직자	해당공직자 또는 사인(私人)

■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102>, 최종확인일, 2018.9.20

## (2) 신고절차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절차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이때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이러한 신고자의 신고를 접수한 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제1항),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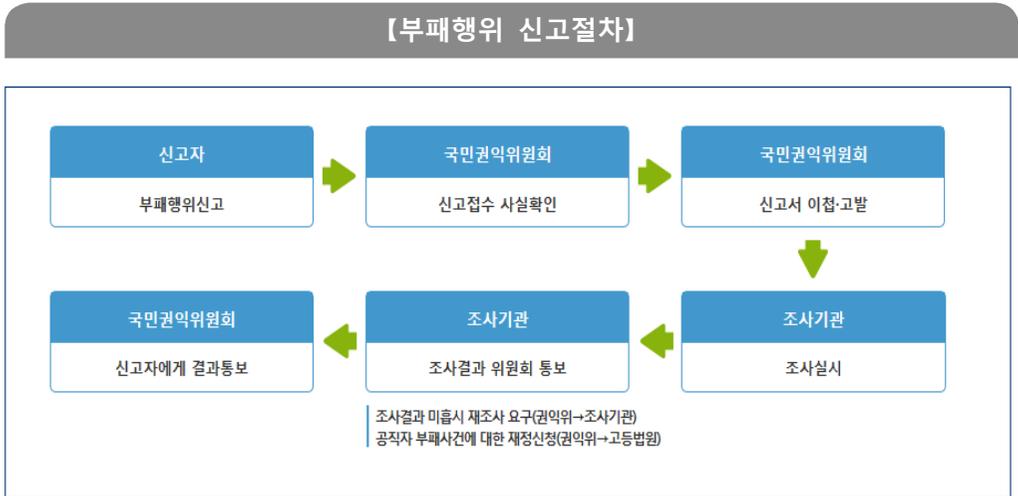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제4항). 이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5항).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6항).

아울러 조사기관의 경우에 있어 조사결과 처리절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제1항). 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이때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4항).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5항).

이상에서와 같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절차를 도시화하면 아래와 같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102>, 최종확인일, 2018.9.20

## II. 신고자 보호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에서 규정되고 있는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이하의 규정에 근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1) 신분보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항)라고 규정하여 부패방지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

며(제2항),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3항).

위원회는 신고자의 위에서와 같은 요구가 있을 경우,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제4항), 이러한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제7항).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8항). 아울러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제9항).

## (2) 불이익 처분절차의 일시정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위원장은, 1.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의 경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요구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1항).

### (3) 불이익의 추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 (4) 신고자의 비밀보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위원회는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4항).

### (5) 신변보호조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1항). 이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 (6) 책임의 감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동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1항).

## III. 신고자 보상·포상

### (1) 포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로써(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2억원 이하로 하며(동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5억원 이하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 (2) 보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제2항). 이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하는 경우에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 【부패행위신고자 보상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302> 최종확인일, 2018.9.20

#### IV. 운영현황

위에서와 같은 범규범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부패행위신고 관련 업무의 운영현황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통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1) 부패신고자 보호사건 접수 처리 현황 ('02. ~ '17. 12. 31.)

## 【부패신고자 보호사건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소계	인용	종결
신분보장	201	199	66	133
신변보호	29	29	21	8
신분공개 확인	21	21	8	13
합 계	251	249	95	154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 보호현황 20171231 관련 통계자료 :  
<https://1398.acrc.go.kr/hpg/bbs/selectHpgAcrcBoardDetail.do>, 최종확인일, 2018.9.20.

위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있어 신분보장에 관한 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가지는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 (2) 부패신고 보상-포상사건 통계('17. 12. 31.기준)

## 【부패신고 보상-포상사건 통계】

(단위: 건)

연 도	계	'07 이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573건	81건	24건	26건	33건	17건	54건	48건	36건	32건	101건	121건
(지급액)	(13,371)	(889)	(428)	(720)	(663)	(1,524)	(1,480)	(1,011)	(695)	(1,436)	(2,326)	(2,199)
보상금	482건	70건	18건	20건	23건	12건	40건	37건	30건	29건	90건	113건
(지급액)	(12,657)	(804)	(328)	(642)	(604)	(1,499)	(1,400)	(951)	(619)	(1,427)	(2,275)	(2,108)
포상금	91건	11건	6건	6건	10건	5건	14건	11건	6건	3건	11건	8건
(지급액)	(715)	(85)	(100)	(78)	(59)	(25)	(80)	(60)	(76)	(10)	(51)	(91)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보상,포상사건 통계 17.12.31기준 관련 통계자료 :  
<https://1398.acrc.go.kr/hpg/bbs/selectHpgAcrcBoardDetail.do>, 최종확인일, 2018.9.20.

통계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보상내지 포상의 지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자 부담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공신법상 공익침해행위

### I. 신고의 대상행위 및 절차 등

#### (1)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신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즉 공신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란,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 등을 취소·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업무·효력·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말한다(공신법 시행령 제3조).

#### (2) 신고절차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공신법 제6조). 이때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신법 제8조). 이때 공신법은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신법 제8조의2)

위원회는 필요한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공신법 제9조제3항).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신법 제9조제4항).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1.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공신법 제9조 5항). 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신법 제9조제7항), 재조사·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공신법 제9조제8항)

## II. 신고자 보호

공신법은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그리고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의 장을 갖추고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 (1) 비밀보장 (공신법 제12조)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4항).

### (2) 신변보호조치 (공신법 제13조)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1항). 이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 (3) 책임의 감면 (공신법 제14조)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1항). 아울러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

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정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제2항). 나아가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3항).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제5항).

#### (4)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공신법 제15조)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아울러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 (5)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신법 제16조)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 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6) 보호조치 신청 (공신법 제17조)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제1항).

### (7) 불이익조치 추정 (공신법 제23조)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에는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III. 신고자 보상, 포상 등

### (1) 보상금 (공신법 제26조)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3항),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제4항).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3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405>- 최종확인일, 2018.9.20

### (2) 포상금 (공신법 제27조)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제1항), 2억원의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한다(공신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 (3) 구조금 (공신법 제27조)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제2항).

#### IV. 운영현황

위에서와 같은 법규범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관련 업무의 운영현황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통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1) 공익신고 접수현황 (법시행 ~ 2017년12월31일)

【공익신고 접수현황】

분야 연도	계 (비율)	국민의 건강(비율)	국민의 안전(비율)	환경 (비율)	소비자의 이익(비율)	공정한 경쟁(비율)	기타 (비율)
합 계	24,365 (100.0)	10,747 (44.1)	3,905 (16.0)	2,262 (9.3)	1,213 (5.0)	457 (1.9)	5,781 (23.7)
‘11	292 (100.0)	169 (57.9)	8 (2.7)	10 (3.4)	46 (15.8)	18 (6.2)	41 (14.0)
‘12	1,153 (100.0)	389 (33.7)	167 (14.5)	201 (17.4)	118 (10.2)	29 (2.5)	249 (21.7)
‘13	2,887 (100.0)	1,208 (41.9)	298 (10.3)	165 (5.7)	191 (6.6)	87 (3.0)	938 (32.5)
‘14	9,130 (100.0)	5,570 (61.0)	1,936 (21.2)	312 (3.4)	345 (3.8)	94 (1.0)	873 (9.6)
‘15	5,771 (100)	1,931 (33.5)	595 (10.3)	1,151 (20)	174 (3)	39 (0.7)	1,881 (32.5)
‘16	2,611 (100)	937 (35.9)	377 (14.4)	232 (9)	149 (5.7)	69 (2.6)	847 (32.4)

분야 연도	계 (비율)	국민의 건강(비율)	국민의 안전(비율)	환경 (비율)	소비자의 이익(비율)	공정한 경쟁(비율)	기타 (비율)
'17	2,521 (100)	543 (21.5)	524 (20.8)	191 (7.6)	190 (7.5)	121 (4.8)	952 (37.8)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계 17.12.31기준 관련 통계자료,  
<https://1398.acrc.go.kr/hpg/bbs/selectHpgAcrcBoardDetail.do>, 최종확인일, 2018.9.20

## (2) 공익신고 처리현황 (법시행 ~ 2017년12월31일)

### 【공익신고 처리현황】

구분	분야	처리 유형			
		소계	이첩	송부	종결
합 계		23,975	607	13,549	9,819
'11년	소 계	227	8	143	76
	국민의 건강	144	5	128	11
	국민의 안전	4	3	0	1
	환경	8	0	5	3
	소비자의 이익	36	0	1	35
	공정한 경쟁	11	0	8	3
	기타	24	0	1	23
'12년	소 계	1,113	104	531	478
	국민의 건강	380	61	262	57
	국민의 안전	151	4	99	48
	환경	193	30	115	48
	소비자의 이익	113	6	22	85
	공정한 경쟁	29	3	10	16
	기타	247	0	23	224
'13년	소 계	2,509	73	1,427	1,009
	국민의 건강	951	9	886	56
	국민의 안전	287	6	238	43
	환경	163	54	96	13
	소비자의 이익	174	1	139	34
	공정한 경쟁	74	3	55	16
	기타	860	0	13	847
'14년	소 계	8,239	168	6,569	1,502
	국민의 건강	5,705	125	5,254	326
	국민의 안전	925	5	767	153
	환경	280	27	242	11

구분	분야	처리 유형			
		소계	이첩	송부	종결
	소비자의 이익	255	9	197	49
	공정한 경쟁	108	2	65	41
	기타	966	0	44	922
'15년	소 계	7,089	90	3,190	3,809
	국민의 건강	2,087	44	1,810	233
	국민의 안전	1,596	15	1,054	527
	환경	1,185	17	96	1,072
	소비자의 이익	276	12	210	54
	공정한 경쟁	41	2	20	19
	기타	1,904	0	0	1,904
'16년	소 계	2,560	79	1,155	1,326
	국민의 건강	884	33	589	262
	국민의 안전	369	22	275	72
	환경	222	10	163	49
	소비자의 이익	164	11	91	62
	공정한 경쟁	71	3	37	31
	기타	850	0	0	850
'17년	소 계	2,238	85	534	1,619
	국민의 건강	498	31	221	246
	국민의 안전	408	40	182	186
	환경	195	7	64	124
	소비자의 이익	137	4	50	83
	공정한 경쟁	48	3	17	28
	기타	952	0	0	952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계 17.12.31기준 관련 통계자료, <https://1398.acrc.go.kr/hpg/bbs/selectHpgAcrcBoardDetail.do>, 최종확인일, 9.20

### (3)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현황(2011.9.30.~2017.12.31.)

####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보상금	
	건수	금액
합계	5,705	4,613,606.6
2011	-	-
2012	32	28,472

구 분	보상금	
	건수	금액
2013	319	227,708
2014	657	397,340
2015	511	379,997
2016	2,476	1,603,578.6
2017	1,710	1,976,511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상구조 관련 통계자료 2017 관련 통계자료,  
<https://1398.acrc.go.kr/hpg/bbs/selectHpgAcrcBoardDetail.do>, 최종확인일, 2018.9.20

#### (4)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현황(2011.9.30.~2017.12.31.)

#####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구조금	
	건수	금액
합 계	5	1,892.64
2011	-	-
2012	1	79
2013	-	-
2014	1	206
2015	-	-
2016	2	739.8
2017	1	867.84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상구조 관련 통계자료 2017 관련 통계자료,  
<https://1398.acrc.go.kr/hpg/bbs/selectHpgAcrcBoardDetail.do>, 최종확인일, 2018.9.20

## 제3절 문제점

### I. 운영상 실효적이지 못한 신고자 보호

지속적으로 공신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왔다고는 하나, 여전히 신고자 비밀보장, 법률상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공익신고침해 행위의

범주, 신고자의 입장에 있어 불편한 신고 등 절차에 따른 문제점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내부 신고자의 경우, 신고 이후 일정 절차지속에 있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II. 관련 법률 간 체계성 미흡에 따른 신고자 비친화적 법제 운영 우려

### (1) 관련 법제 분석

#### 1) 부패방지권익위법

##### A. 법제구성

#### 【부패방지권익위법 법제구성 개관】

법률	법제구성	관련 주요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01. 7. 24. 제정 [법률 제6494호])	총 5개장 28개 조항 및 부칙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최종 확인일, 2018.10.30.

##### B. 신고자 보호-보상관련 주요 법제연혁

#### 【관련 주요연혁】

입법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제정	2001. 7. 24. 제정 [법률 제6494호]	
제정 및 개정이유	2001. 7. 24. [법률 제6494호]	부정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기구의 설치,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시민의 감시 및 참여기능 강화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05. 7. 21. [법률 제7612호]	국가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 목표를 지향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보호보상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007. 8. 3. [법률 제8633호]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에 공직자 행동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 업무를 포함하고, 부패행위 신고처리기간을 신고접수일부터 60일 이내로 법정화하며, 신고자가 비공직자인 경우에도 국가청렴위원회가 신고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9. 1. 7. [법률 제9342호]	실효적인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의 대상을 부패방지 업무에서 공직자의 일반적인 업무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상의 선거권자와 주민 감사청구권자의 기준연령과 같이 이 법에 따른 감사청구권자의 연령 기준도 19세 이상으로 확대 개선하려는 것임.
	2017. 4. 18. [법률 제14831호]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017. 10. 31. [법률 제15024호]	현행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 경위 확인 권한 및 관련자 징계요구권한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벌금형 수준의 균형이 맞지 않아 벌칙규정이 불합리

	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패행위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호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경위를 확인·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비밀누설죄 및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대한 벌금수준을 각각 5천만원 및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벌칙규정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신고자 인적사항 노출에 대한 역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연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법률의 경우, 국가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행정기관으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과 공직자에 대한 부패행위방지 및 이를 위한 신고절차와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타 법률과는 상이한 입법 구성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함이 일반적</li> <li>- 때문에 법제연혁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그간의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입법 구성체계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 과연 조직법적 체계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관련 규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어디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지 검토 필요</li> <li>- 법제 연혁을 통하여 인지되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신고절차, 신고대상범위, 신고절차 등에 관한 개선은 물론 나아가 행정형벌 기준에 관한 규정에 걸쳐 개정을 위한 노력이 경주. 이는 이하의 공신법상 개정되는 주요 신고자 보호내지 보상관련 개정사항을 동 법률에도 적용하기 위한 주무부처의 실무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 가능</li> </ul>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최종 확인일, 2018.9.20.

## 2) 공신법

### A. 법제구성

#### [공신법 법제구성 개관]

법률	법제구성	관련 주요내용
공익신고자보호법 (2011. 3. 29. [법률 제10472호])	총 5개장 39개 조항 및 부칙	제3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최종 확인일, 2018.9.20

## B. 신고자 보호-보상관련 주요 법제연혁

## 【공신법 법제구성 개관】

입법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2011. 3. 29. [법률 제10472호]	
개정 및 개정이유	2011. 3. 29. [법률 제10472호]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14. 1. 14. [법률 제12265호]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의 이익제기, 직무집행 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시 비밀엄수 의무 적용의 배제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
	2015. 7. 24. [법률 제13443호]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이 높은 「학교급식법」 등 총 99개의 법률을 새로이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족전염병예방법」 등 169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모두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공익신고자를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로 구분하고, 특별보호조치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로 확대하고,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17. 4. 18. [법률 제14830호]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 신청,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신고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017. 10. 31. [법률 제15023호]	현행법상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신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지 못하여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관계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불이익조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및 긴급 구조금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018. 4. 17. [법률 제15616호]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구성	총 5개장 39개 항목 및 부칙	
법제연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법률의 경우 무엇보다 제정취지,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에서 본 법률의 성격과 추구하고자 하는 개정방향을 명확히 설정</li> <li>- 궁극적 행정목적인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 행정조직내지 인력만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행정현실인 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이러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조력자의 지위와 협조를 요청</li> <li>- 때문에 본 법률의 개정연혁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러한 행정조력자로서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강한 개선 노력 전개</li> <li>- 특히 2015년 개정을 통한 공익신고대상 법률의 폭 넓은 확대는, 현행 우리나라 법제가 가지고 있는 입법 상 소위 ‘규정대상 열거주의’가 갖는 한계점을 입법적으로 개선해보고자 하는 노력. 또한 신고자의 유형을 내·외부로 구분,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점은 행정조력자로서의 신고자가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조직내 불이익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li> <li>- 또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li> </ul>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최종 확인일, 2018.9.20.

**(2)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신법 간 관련 주요규정 비교**

이하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양 법률 간 신고자 보호·보상과 관련된 주요규정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이는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현재 규정되고 있는 양 법률 간의 주요 규정내용을 살피고 미흡하거나 또는 보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관련 규정 밀도가 높은 법률규정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함이다. 이는 향후 일원화 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안 마련 시 입법 규정모델로서 검토-활용되어지는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신법 간 관련 주요규정 비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	-	제 8 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같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8.4.17.][시행일 : 2018.10.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	<p>제 9 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li> <li>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li> <li>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li> <li>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li> <li>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li> <li>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li> <li>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li> <li>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보 호		<p>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p>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p>	<p>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p> <p>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p> <p>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p>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p>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p> <p>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li> <li>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li> <li>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li> </ol>	<p>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p>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p> <p>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p>	
		<p>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 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p>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p> <p>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p>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p>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lt;개정 2018.4.17.&gt;</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lt;개정 2018.4.17.&gt;</p> <p>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p> <p>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p>제62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p> <p>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요구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1.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p> <p>2.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p> <p>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p>
		<p>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p> <p>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p> <p>2. 공익신고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p>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p>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p> <p>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p>
		<p>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p> <p>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p> <p>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p>
		<p>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p>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구조금		<p>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li> <li>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li> <li>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li> <li>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li> <li>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li> </ol>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p>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p>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p>
별 칙	<p>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①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li> <li>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li> </ol>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li> <li>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li> </ol>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li> </ol>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과 태 료	<p>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li> <li>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li> <li>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li> <li>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li> </ol>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li> <li>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li> </ol> <p>③ 생략</p>	<p>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 최종 확인일, 2018.9.20.

### (3)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신법 간 관련 주요규정 비교 -종합

이하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양 법률 간 관련 규정의 상이점을 신고자 보호제도와 신고자 보상-포상-구조금 제도로 대별 그 간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 1) 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신법 간 신고자 보호제도 분석】

구 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신고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 소속기관, 감독기관</li> <li>※ 공직자의 경우 감사원·수사기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 소속기관, 감독기관,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li> </ul>
비밀보장	비밀 준수 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구든지 ('18.2.1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구든지</li> </ul>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계요구</li> <li>형사처벌('18.2.1시행)</li> <li>※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계요구</li> <li>형사처벌</li> <li>※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6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18.5.1 시행)</li> </ul>
신분보장	불이익 조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이익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li> <li>※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처벌, 경제적·행정적 불이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이익조치를 유형화하여 규정(9가지)</li> </ul>
	결정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용의 경우만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하, 인용, 기각 규정</li> </ul>
	신청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1년 이내('18.5.1 시행)</li> </ul>

구 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분상 불이익조치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가 조치요구 불이행: 형사처벌</li> <li>※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li> <li>조치요구 불이행(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 제외): 과태료</li> <li>※ 1천만원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분상 불이익조치한 자가 조치요구 불이행: 형사처벌</li> <li>※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8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8.5.1 시행)</li> <li>인사상 불이익조치, 임금 등의 차별지급 등을 한 자가 조치요구 불이행: 형사처벌</li> <li>※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18.5.1 시행)</li> </ul>
	불이익 추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상회복 등을 요구'</li> <li>'소를 제기한 경우'에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신고 방해, 취소 강요'</li> <li>'신고 2년 이내에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li> <li>'보호조치를 신청'('18.5.1 시행)</li> <li>'소를 제기한 경우'에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18.5.1 시행)</li> </ul>
	조치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상회복 등 조치기한 설정: 30일</li> </ul>
	이행 강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자: 2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li> </ul>
	화해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의 직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 권고 또는 화해안 제시 가능</li> <li>※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li> </ul>
신고 방해/취소 강요 금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방해·취소강요 금지</li> </ul>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반시 형사처벌</li> <li>※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18.5.1 시행)</li> </ul>
책 임	감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벌, 징계처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벌, 징계처분, 불리한 행정처분</li> </ul>

구 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감 면	제재 유형		
	위원회 책임 감면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는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 요구 가능</li> </ul>
손해배상 청구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에 대한 피신고자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li> </ul>
관계기관 협조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과 협조의무 규정</li> </ul>
쟁송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제기 기한 제한, 행정 심판 청구 제한근거 규정</li> </ul>

출처: 필자정리

## 2) 신고자 보상·포상·구조금 제도

###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신법 간 신고자 보상·포상·구조금제도 분석】

구 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보 상 금	지급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신고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및 타기관 신고자</li> </ul>
	지급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몰수·추장금, 국세·지방세 부과</li> <li>•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li> <li>•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 절감</li> <li>• 그 밖에 처분이나 판결</li> <li>※ 벌금·과료·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몰수·추장금, 국세·지방세 부과</li> <li>•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li> <li>• 벌칙 또는 통고처분</li> <li>•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li> <li>• 과징금, 부담금, 가산금 부과</li> </ul>
	신청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확정된 날부터 5년</li> </ul>

구 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상·하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한 : 30억</li> <li>• 하한 : 규정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한 : 30억</li> <li>• 하한 : 20만원</li> </ul>
환수금 일부 국고 상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수입회복 등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자체로부터 상환</li> </ul>
보상금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비</li> <li>※ 시행령에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금 및 구조금 반환근거 규정</li> </ul>
포상금 지급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신고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및 타기관 신고자</li> </ul>
구조금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로 인한 치료, 이사, 쟁송비용, 임금손실액 및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지급 가능</li> </ul>

출처: 필자정리

#### (4)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신법 간 관련 주요규정 비교 -분석

위에서와 같은 양 법률 간 관련 주요규정을 비교-종합한 결과, 무엇보다 관련 법률 간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이 법령별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는 양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연혁 분석에서 선행되어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입법취지와 제정 이후 전개방향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양 법률이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우려되는 바 있는 것이다.

현행 관련 법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공직자의 일정 ‘부패행위’를 그리고 공신법에 있어서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대상 범주로 설정하고 이를 입법기술상 나열하는 소위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범주 설정에 따라 양 법률 상 이에 상응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관련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자의 입장에 있어서

는 본인이 행하는 신고의 대상이 어떠한 행위에 속하는 지를 사전에 각 법률에 따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보호내지 보상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행정조력자로서의 신고자에게는 친숙하지 못한 비친화적 법제 운용이 되는 것이다.

즉 행정조력자로서의 국민의 입장에 있어서는, 본인이 행하는 ‘신고’라는 행위를 통하여 궁극적 행정목적 달성에 협조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지, 본인이 행하는 신고가 부패행위에 대한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인지에 대한 인식까지를 요구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 운용 목적인 사회질서유지에 있어 관계인 등의 폭넓은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관계인 간 신뢰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도운용상 비효율성을 야기, 부패신고자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수준에로의 강화를 요청하는 민원 증가, 신고자 보상·포상의 경우에도 보상 대상, 지급기준 등이 달라 신고자 간 형평성에 관한 의문이 증대할 것이다. 아울러 실무를 담당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 규정되고 있는 보호-보상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입법적 관점에서의 소위 ‘체계정당성의 원칙(Prinzip der Systemgerechtigkeit oder Systemgemäßheit)’<sup>1)</sup> 에도 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법률규정이나 개별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과 상호 유기적으로 결부하여 전체적인 법제도와 법령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들 규정 사이에는 조화의 관계내지는 균형의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sup>2)</sup>는 것이다.

때문에 이는 곧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신고자 만족도를 향상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관한 법제적 일원화 방안 모색으로 귀결되어 지는 것이다.

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7., 10면.

2) 홍완식, 입법학 연구, 피앤씨미디어, 2014., 242면.



## 제3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 방안

제1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체계 일원화 의미와  
전개방향

제2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체계 일원화 방안 전개



## 제3장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 방안

## 제1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체계 일원화 의미와 전개방향

### I.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체계 일원화 의미

본 보고서에서 앞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언급하고자하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체계 일원화”란, 현행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신법 간의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규범 체계로 통일화 하는 법제적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보호·보상에 관하여 양법에 준용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경우, 이는 일원화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II. 전개방향

이하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일원화 과정을 전개하기 위한 전개과정을 설정하고 이 미 앞에서 검토된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종합-분석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총 3가지의 법제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3가지 방안은, 제1안으로서 별도 기본법 형태의 법률 제정 하는 방안, 제2안으로서는 현행 법제는 유지하되 보호-보상 관련 별도의 절차법적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그리고 제3안으로서 현행법제의 유지 하에 보다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체계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법률로의 통합(포섭)된 법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설정하여 보았다.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체계 일원화 전개 방향]

문제인식	권익위 소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률 규정내용 상이로 한 제도 운영의 비합리성 및 제도 효율성 저하
↓	
개선 목표	부패·공익 신고 보호-(보상) 강화에 기반한 법제도 일원화
↓	
관련 법제 비교-분석을 통한 일원화 토대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률 법체계 분석 및 법률 간 신고자 보호-보상 주요규정 비교</li> <li>- 현장 실무자, 전문가 의견수렴</li> </ul>
↓	
일원화 방안 제시	제1안 : 별도 기본법 형태의 법률 제정 제2안 : 현행 법제 유지, 보호-보상 관련 개별 법률 제정 제3안 : 현행법제 유지 하에 통합(포섭) 법체계 구성

출처: 필자 정리

## 제2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체계 일원화 방안 전개

### I. 입법형식의 선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신법상 신고자 보호·보상체계의 일원화 방안 도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소위, 분법의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또는 통합 단일법의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형식에 관한 논의이다.

일반적으로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의미하는 “체계성”과 법규내용이 되도록이면 활용에 편리하고 간편하고 명료하다는 “실용성”에 있어서는 통일법(단일법)체계가 우수하고, 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즉응성 또는 적응성”에 있어서는 개별법 체계(분법화)가 우수하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단일법, 통합법 간 장단점 비교】

기 준	검토항목	입법체계유형	
		단일법	분법
적용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법취지와 목적의 실현에 적합하게 법률의 내용이 사안적합성과 행정적합성에 따라 집약화, 세분화되어 일관성있는 법률 집행이 가능하다.</li> <li>법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부서)의 통일성과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 해석상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다.</li> </ul>	우수	미약
친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적용자와 일정한 수범자가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li> <li>개념적 명확성, 명백한 관련요소의 설정과 논리적 구조를 통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적용가능성과 활용가능성이 있다.</li> <li>법적용자 및 수범자가 필요로 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법령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li> </ul>	미약	우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목적의 달성가능성과 법적용자에게 건설적이고 동기부여적인 사고를 제시하여 탄력적인 행위가능성이 부여된다.</li> <li>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운용이 가능하다.</li> <li>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바람직한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입법관리가 용이하고, 입법비용도 절감된다.</li> </ul>	미약	우수
부수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의 집행단계에서 재량이 부여된 곳에서의 재량확정 또는 불확정 법개념에 대한 해석의 운용에 대한 판단능력이 제고된다.</li> </ul>	미약	우수

출처: 이세정의 5인, 관세법 분법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135면~ 136면.

## II. 일원화 전개시 주요 고려사항

### (1) 입법목적의 상이성

이는 입법목적이 상이한 법률이 과연 일원화로서 그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인지에 입법기본원리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양 법률은 그 범 규범적용의 범위가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이라는 상이점을 가지고 있다.

#### 【입법목적의 상이성】

부패방지 권의위법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설치에 관한 법률</li> <li>- 기관고유업무로서의 부패방지 업무관장</li> <li>- 특별권력관계내부의 부패방지(사전예방적) 및 청렴의무</li> </ul>
공신법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사적영역에 있어 행정질서유지</li> <li>- 신고자등의 보호</li> <li>- 신고활성화를 위한 유인적 요소로서의 보상 활용</li> </ul>

출처: 필자정리

### (2)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의 이질성

이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대상행위의 성격에 따른 법제정비 방향을 고려하기 위함으로써, 일반적 공익내지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법정개념으로써 구분되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공익침해의 이질성】

부패방지 권익위법	<p>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p> <p>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p> <p>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무 위반(경제적 사유, 재산상 손해야기)</li> <li>- 포괄적 입법형식</li> </ul>
공신법	<p>“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별칙에 해당하는 행위</p> <p>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p> <p>“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 등을 취소·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p> <p>2. 영업·업무·효력·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p> <p>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p> <p>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당시 설계된 행정질서의무확보 및 행정질서벌적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에서 행정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개 (행정질서벌+행정벌)</li> <li>- 열거주의식 입법형식 견지</li> <li>* “이에 준하는 공익침해행위” 추가 (2018.05)</li> <li>- 대상법률의 증가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특성 파악 난이 및 혼란</li> <li>* 제정당시 180개, 현재 284개 법률</li> </ul>

출처: 필자 정리

### (3) 신고자 의무의 성격 차이

이는 개별 법률상 규정되고 있는 신고의 성격을 파악, 이를 통한 공익제고(사회질서유지)라는 행정목적의 동질성을 도출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신고자 의무의 성격】		
부패방지 권익위법	<p>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p> <p>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의 의무위반행위발생 우려에 대한 사전예방적 성격</li> <li>- 공익실현 이바지가 최종적 존립근거인 공직자에 대한 기속적(강제적) 신고의무</li> </ul>
공신법	<p>제 6 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p> <p>제 7 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행정업무의 위탁 내지 적극적 참여자(고양된 시민의식 발현)로서의 참여형식</li> <li>- 공익실현 이바지가 최종적 존립근거인 공직자에 대한 기속적(강제적) 신고의무</li> </ul>

출처: 필자 정리

#### (4) 입법체계 방식의 상이성

이는 개별 법률을 구성하는 주요내용의 전개양태에 따른 구분을 통한 검토이다.

#### 【입법체계 방식의 차이】

부패방지 권익위법	- 입법목적, 특정피신고자, 의무위반행위의 포괄적 성격, 위원회	- 대륙법계 입법방식에 근접
공신법	- 입법목적, 광범위한 공익침해행위 확대화 경향, 고양된 (유인된) 시민참여, 조정자로서의 위원회, 소송, 보상, 포상, 보조금	- 영미법계 입법방식에 근접

출처: 필자 정리

### III.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단계적) 일원화 방안

이상에서와 같은 일원화 전개과정을 통하여 제시될 수 있는 일원화 방안은, 우선 해당 관련 개별 법률 간 입법목적 상이성은 인정되며, 일원화를 위한 현행 범규범적 구분에 따른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의 상이성에 따른 양자 간 작위적 범위 재설정내지 포섭 방안설정은 곤란하며, 다만 신고(기속적 의무, 고양된 시민의식에 따른 유인된 의무내지 조력적 국가행정에로의 참여행위) 행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자의 보호·보상체계를 굳이 달리 규정할 실익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평가결과에 따라,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위한 방안으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안 제시 및 그 가운데 제3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고려됨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 【일원화 방안 장단점 비교】

입법 정비안	입법양태	장점	단점
제1안	별도 기본법 형태의 법률 제정	- 해당 행정영역 업무에 대한 통일적·체계적 입법토대 마련	- 입법목적이 상이한 영역 - 기본법체계로 하기에는 협소한 행정영역 - 개별 법률 제정에 대한 입법경제적 부담
제2안	현행 법제 유지, 보호-보상 관련 개별 법률 제정	- 해당 개별 법률상 중점적인 정책 전개를 위한 입법적 토대 마련 - 해당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 입법목적의 중심적 요소에 대한 분법화 부담 - 입법체계 설정의 곤란 (규제법, 절차법, 진흥법) - 개별법률 제정에 대한 입법경제적 부담
제3안	현행법제 유지 하에 통합 (포섭) 법체계 구성 (신고자 보호·보상체계 :부패방지법 < 공신법 )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요건, 절차는 존치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관련 규정 삭제, 공신법으로 이동 - 공신법상 입법체계 조정 (법제명, 목적, 정의, 장·신설-구분, 경과규정 등) - 관련 규정 간 형평성 유지	

출처:필자 정리

아울러 이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입법정비는, 현 제5장을 삭제, 공신법으로 이동하여 공신법 체계 내에서 포섭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제00조(부패행위의 신고자 등 보호·보상) 제5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 또는 보상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법률에 따른다.” 라고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참고문헌



## 참고문헌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7.

이세정의 5인, 관세법 분법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홍완식, 입법학 연구, 피앤씨미디어,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최종 확인일, 2018.9.20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102>, 최종확인일, 2018.9.20.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302> 최종확인일, 2018.9.20.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405>- 최종확인일, 2018.9.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계 17.12.31기준 관련 통계자료, <https://1398.acrc.go.kr/hpg/bbs/selectHpgAcrcBoardDetail.do>, 최종 확인일, 2018.9.20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 보호현황 20171231 관련 통계자료 : <https://1398.acrc.go.kr/hpg/bbs/selectHpgAcrcBoardDetail.do>, 최종확인일, 2018.9.20.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보상,포상사건 통계 17.12.31기준 관련 통계자료 : <https://1398.acrc.go.kr/hpg/bbs/selectHpgAcrcBoardDetail.do>, 최종확인일, 2018.9.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상구조 관련 통계자료 2017 관련 통계자료, <https://1398.acrc.go.kr/hpg/bbs/selectHpgAcrcBoardDetail.do>, 최종확인일, 2018.9.20.



현안분석 2018-05  
내부신고자 보상-보호체계 일원화등 발전방안 연구

2018년 9월 25일 인쇄  
2018년 9월 28일 발행

발행인 | 이익현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5,5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871-3 93360



---

저자명

강 문 수

학 력

독일 튀빙엔대 법학박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송전선로 첩탈부지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연구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법의 타당성

연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문제과제에

대한 실무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구

행정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9 788966 848713  
ISBN 978-89-6684-871-3

값 5,500원